

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

수신자 KT노동조합 위원장 김구현 귀하
(경유)
제목 규약 시정명령

귀 노동조합 조합원 김종백이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신청 건에 대해 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”에 의거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의결 되었기에 불임과 같이 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항”의 규정에 따라 귀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을 명하니 2010.08.20까지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시정명령서 1부. 끝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



07/22

협조자

시행 근로개선지도1과-1113 (2010. 07. 23.) 접수
우 463-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5-1 / www.moel.go.kr
전화 031-788-1592 전승 031-788-1529 / yours0427@moel.go.kr / 비공개(6)

Me First. 녹색은 생활이다.

규 약
 노동조합 결의·처분 의 시정명령서
 단체 협약

① 노동조합의 명칭	KT노동조합	2 노동조합의 형태	단위노조(전국)
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(463-010)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	4 전화번호	031-727-1126
대표자	⑤ 성명	김구현	6 주민등록번호
	⑦ 주소	(463-010)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	8 전화번호
⑨ 시정명령	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 규약 제24조1항을 그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실 것		

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

의하여 규 약
 결의·처분 시정을 명합니다.
 단체 협약

(2010. 07. 23.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

비고 : 시정명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.